

수입식품 정보 알리미 (2026-92)

알룰로오스 및 알룰로오스 함유한 가공식품 수입 검사 관련 사항 알림

○ 관련: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1호, '26.1.13.)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현재 알룰로오스는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3]에 따라 한시적 기준·규격에서 전환된 원료로서 과당류를 알칼리화 또는 효소적 처리를 통하여 제조할 수 있으나,

나. 최근 관련 규정 개정(예정)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(선적일 기준)는 알룰로오스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제는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 관련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」에 따라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거나, 효소제로 인정된 것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다. 따라서, 알룰로오스 및 알룰로오스를 함유한 가공식품 수입 시에는 위 나.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(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)를 구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수입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
※ “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” 관련 문의처

- (미생물)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☎ 043-719-2356
- (효소제)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☎ 043-719-2510
- (제조기준)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☎ 043-719-2431

📖 이 정보는 관련 수입 영업자에게 공유 또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📖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→ 소통알림 → 안전정보

📖 동 알리미서비스 수신 (메일 또는 FAX) 을 원하지 않는 경우 ☎ 051-602-621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
2026. 8. 12.

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

【 공직비위·갑질 신고 및 공익신고안내 】 ※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.
▶ 공직비위·갑질 신고 : 식약처 홈페이지 “국민소통 > 여론광장 > 공직비위·갑질 신고방”
▶ 공익 신고 : 식약처 홈페이지 “국민소통 > 여론광장 > 부패·공익신고”